

광주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620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620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5377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황선

변론종결 2022. 4. 6.

판결선고 2022. 4. 2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5377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6. 19. 접수 제157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신,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